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. 12. 14.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수정이유

가.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자치사무는 개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

나.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근거할 수 있으므로

다.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합함.

수정주요내용

■ 안 제1조 본문 중 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삭제함.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본문 중 “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”를 “이 조례는 충청북도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